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25년 휴식 법제화, 올해는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현장 이행력 확보'
-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4.10.22.)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25.7.17.)을 통하여,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하였다.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및 상황전파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노동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방관서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5.15.~9.30.) 동안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는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다.

②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기상청에서 올해 극단적 고온(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③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불시 감독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폭염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사전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개선하도록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기본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④ 폭염 취약 업종별·직종별 맞춤형 중점관리

온열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서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현장 투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늘막과 이동식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물류·택배업은 실내 작업장임에도 환기가 어려워 작업장 내 관리 온도를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휴게시설(선풍기) 설치 및 개인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환경 개선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에서 복사열 노출이 우려되므로,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부여와 이동식에어컨 확충을 지도하고, 온열질환이 다발하는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 조치 의무도 철저히 감독한다.

공공분야는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예초, 청소 등) 현장을 우선 점검하여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에 앞장서도록 관리·강화한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폭염취약 직종인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 (6.1. ~ 8.31.)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및 현장 밀착 기술지원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이동식에어컨 등 재정지원을 280억원으로 확대하고,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15억원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기술지원(14만개소)하고 일터지킴이(1,000명)를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론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 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참고. '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백우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895)



참고

'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폭염 재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 대책기간(5.15.~ 9.30.)을 운영, 우리부는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 추진
 - * ▲(대통령 지시사항, '26.5.12.)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
 - ▲(대통령 지시사항, '25.7.10.) '117년 만의 무더위...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신속 집행 주문
- ❖ 이번 대책은 폭염 취약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①「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② 폭염 취약사업장 선정 및 폭염상황을 신속 전파
 - ③ 건설·물류·이동·이주노동자 등 취약 직종을 중점관리하고 ④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 기술 및 재정지원 추진

2

기후전망 및 온열질환 산재 현황

- (기후전망) '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25.7℃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 '26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91년~'20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 평년('91~'20) 23.7℃ → '23년 24.7℃ → '24년 25.6℃ → '25년 25.7℃(역대1위)
- (산업재해) 최근 5년간('21~'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228명 발생, 매년 온열질환자는 증가* 추세
 - * ('21년) 25명 → ('22년) 29명 → ('23년) 33명 → ('24년) 70명 → ('25년) 71명
 - (업종별)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 106명(46.5%), 제조업 33명(14.5%), 시설관리업 23명(10.1%) 順
 - (규모별)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62명(71.0%) 발생 ※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전체의 58.2%



① 현장 중심의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 (대응체계) 본부·지방관서별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현장 예방활동 추진
 - *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 참여하는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관서는 지방관서장이 총괄)
- (폭염상황) 폭염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사이렌을 활용,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 및 온열질환 재해사례(사망자 포함) 전파
 - 또한,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 내용으로 의무화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상시 안내
 -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 (감독·점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체점검(5.15.~5.30.) 실시, 폭염안전 감독 및 점검 물량 증대*를 통해 촘촘한 사업장 관리
 - * ▲(폭염감독) '26년1,000개소(300개소↑), ▲(병행점검) '26년15,000개소(11,000개소↑)

②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 기상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되는 경우 '폭염중대경보' 신설
 - * 일 최고 체감온도(38℃ 이상) 하루 이상 예상 시
- 폭염중대경보 도입(기상청)으로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가 준수 되도록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포함하여 폭염 취약사업장에 적극 안내
 -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③ 폭염 취약 업종별 주요 대책

- (건설업) '25년 온열질환 발생 건설사의 전국 시공현장 관리* 및 특보 발령 시 기관장 점검 및 감독관 유선지도 등 관리 강화
 - *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및 NDMS 신고 건설사(86개사)의 전국 시공현장에 대해 재발방지계획서 수보 → 폭염 특보 시 현장확인
-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시 발주자에게 별도의 지체상금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적극 안내*
 -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기상재해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개정)
- (물류·택배)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환경 개선 확인, 컨베이어·분류·하역 등 취약작업 안전공단 실태 확인(미준수 시 감독 연계)
- (조선업) 체감온도 기준으로 휴식부여 및 작업중지(권고) 이행 지도, 용접 및 설비·정비 등 작업 수행하는 사내 협력사 포함하여 확인
- (공공분야) 지방정부·공공근로·교육청(급식실) 등 자체점검 개선 지도, 온열환경 미흡 급식실 등 안전공단 기술지원(미준수 시 감독 연계)
- ☞ (대통령 지시사항, '26.5.12.) 공공부문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강화할 것

④ 폭염 취약 직종 중심의 기술 및 재정지원

-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제출(~5.30.), 쉼터 정보* 제공하여 생수나눔(50만병) 캠페인 추진, ^{8대}배달플랫폼사 업무협약 체결
 - * 지방정부 전수점검(~4.30.) → 관계부처 합동 표본점검 추진(5.4. ~ 5.13., 안전공단)
- (이주노동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간담회 개최 등 협업 추진하여 18개국 모국어 OPS 배포, 지방정부 합동점검(200개소. 7.1. ~ 31.) 실시
- (재정지원 확대)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이동식에어컨 등 재정지원 확대('25년 200억원→'26년 280억원) 및 물품지원* 신설('26년 15억원)
 - *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시 온습도계, 쿨키트 등 예방 물품 현장 보급 병행
- (기술지원 강화) 민간재해예방기관 개선 지도(14만개) 및 안전공단 일터지킴이*를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
 - * ▲ 건설업 730명 ▲ 제조업 200명 ▲ 조선업 70명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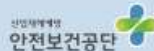
- | | |
|-------------------|--|
| 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 냉방장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 휴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 보냉장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 119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 | | |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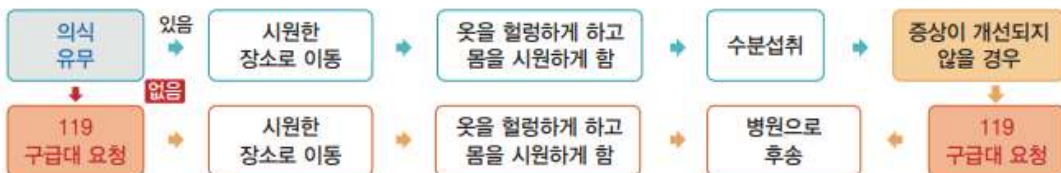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밀폐공간은 '질식사 사망 위험공간'입니다.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

- ✔ 밀폐공간(탱크·저장용기의 내부, 맨홀 등)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반드시 「질식사 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❶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❷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 ❸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질식사 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❶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 ❷ 측정결과 기록·보존
- ❸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 ❹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걱정 개선 필요

냉방장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걱정 개선 필요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걱정 개선 필요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걱정 개선 필요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걱정 개선 필요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걱정 개선 필요

119 신고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걱정 개선 필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걱정 개선 필요

그 외 예방조치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걱정 개선 필요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걱정 개선 필요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걱정 개선 필요
- 휴식시간 추가 배정 등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폭염작업 시간 단축
*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걱정 개선 필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점검표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크기 최소 바닥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적정 개선 필요

→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였는지 여부 적정 개선 필요

위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

→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곳에 설치
* 작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 넘지 않는 곳에 위치 적정 개선 필요

→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장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적정 개선 필요

온도·습도·조명·환기 적정 기준 준수

→ 적정 온도(18~28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설치 적정 개선 필요

→ 적정 습도(50~55%)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설치 적정 개선 필요

→ 적정 조도(100~200럭스)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설치 적정 개선 필요

→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정 개선 필요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적정 개선 필요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적정 개선 필요

→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적정 개선 필요

→ 관리 담당자 지정 적정 개선 필요

목적 외 사용금지

→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적정 개선 필요